

영등포구의회
제12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7. 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6월 25일

2 제안이유

-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 각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함.

3**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인자가 신청 등록하는 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하도록 신설 (안 제5조제1항제4호 부터 제9호까지)
- 당해 증명발급은 영등포구 주민으로 상업적 이용은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단서규정)
-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면제규정 삭제

4**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필요 없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07. 6. 8 ~ 2007. 6. 19(11일 간)결과, 의견반영
 -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

- 이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용어의 정비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와 같은 법 제19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과 정보공개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의 감면대상자 확대는 타 자치구도 이미 시행하는 구가 많으며 감면 대상자의 예우 및 배려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조문에 나타난 용어와 체제가 전체적으로 보아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호가 많으며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 다만, 수정의견은 안 제5조제1항제3호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하고 같은 조 다른 호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을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수정하고 별표는 이 조례가 1988년 제정되어 24차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체계, 부호표시, 맞춤법 등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
부칙은 글자 크기 등과 부칙 제2조제3항은 마침표를 사용하는 등
어법에 따라 수정하고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제정당시
“가목 인·허가에 관한 사항”이 당초 10종에서 3종으로 삭제만 되고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이 당초 16종에서 42종으로 증, 감되
었으나 인·허가 또는 신고인지 판단하여 해당 목에 신설하여야 하
나 개정 시 마다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에 차례로 등재하여
이는 서로 기존 목과 체계에 맞지 않아 인·허가 부분과 신고·신청
부분을 삭제하여 업무기능별로 7개목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없는
수수료 종류 건수의 “종”을 삭제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는 확인사항으로 제1호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나목으로 이기
하여 찾기 쉽고 간결하며 향후 개정시 편재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다듬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
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7. 6

보고자 : 김 완 섭

붙임 : 1. 관련법령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관련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 (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 및 결정)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등) ①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⑤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보훈병원장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처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록 및 결정)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1조(목적) (생략)</p> <p>제2조(적용) (생략)</p> <p>제3조(종류 및 요액) (생략)</p> <p>제4조(수수료의 감면) (생략)</p> <p>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u></p> <p>4. ~ 9. (생략)</p> <p>제6조(징수시기) (생략)</p> <p>제7조(시행규칙)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p> <p>① ~ ② (생략)</p> <p>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로 한다</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적용) (현행과 같음)</p> <p>제3조(종류 및 요액) (현행과 같음)</p> <p>제4조(수수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p> <p>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u>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u></p> <p>4. ~ 9. (현행과 같음)</p> <p>제6조(징수시기)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u>개정한다.</u></p> <p>-----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로 한다.</p>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현 행				수 정 안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6종) (단위 : 원)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1건	800		1) 지방세 납세증명	1건	800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1개년	800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1개년	800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개년 1호	800		1)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호,1개년	800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2)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1건	500		2)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1건	500	
3)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건	1,00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1건	1,000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1건	500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1건	500	
2) 무적증명	1건	500		2) 무적증명	1건	500	
3)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1매	3,500		3)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1매	3,500	
마. 도시계획 및 확인에 관한 증명				마. 도시계획 및 확인에 관한 증명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에정지 증명	1필지	500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에정지 증명	1필지	500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	
나) 칼라발급	1필지	1,500		나) 칼라발급	1필지	1,500	

현 행				수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바. 회계관계 증명 1)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 2)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 증명	1건 1건	1,000 1,000		바. 회계관계 증명 1)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 2)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 증명	1건 1건	1,000 1,000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u>사실 공부</u>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500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u>사실, 공부</u>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500	

현 행				수 정 안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4종) (단위 : 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u>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u>				<u>가. 부동산중개업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u>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 신청	1건	10,000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법인)	1건	20,000	
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5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개인)	1건	8,600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법인, 개인)	1건	3,000	
<u>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u>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 공유재산 대부(계속대부) 신청	1건	1,000		5)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	
2)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2,000		<u>나.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u>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법인)	1건	20,000		1)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 (청소년게임장업 신고)	1건	5,0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개인)	1건	8,600		2)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5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법인, 개인)	1건	3,000		3)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등록업+등록업), (등록업+신고업)	1건	<u>· 많은 금액 수</u>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		4)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u>· 복합유통 제공</u>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				<u>업등록수수료</u>	
8) 건설기계 저장등록(말소) 신청	1건	1,000				<u>1/2로 함</u>	
<u>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u>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5,000	
1)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6)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2,500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1건	50,000		7)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	1건	3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30,000		8)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4)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 사항의 변경	1건	20,000		9)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		1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6)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2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현 행				수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2) 유원시설업 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나) 허가사항 변경신고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4)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5) 위생처리업 6) 위생처리업 변경 7) 세척제 제조업 8) 세척제 제조업 변경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0)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1) 장난감 제조업 12) 장난감 제조업 변경 13) 위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각 종목별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				다.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등록신청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라.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2) 체육시설업 변경 마.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2)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4)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5) 위생처리업 6) 위생처리업 변경 7) 세척제 제조업 8) 세척제 제조업 변경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0)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1) 장난감 제조업 12) 장난감 제조업 변경 ※ 위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각 종목별 신규 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신고업] 1)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청소년계 임장업 신고) 2)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업] 3) 비디오품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4) 비디오품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5)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 6)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 행				수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7)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		바. 의료기관 등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8)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1)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9)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1건	· 해당등록 수수료 +5천원, · 2개 이상의 등록업을 복합하는 경우 그중 큰 금액의 수수료로 함.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1건	50,000	
가) (등록업+ 등록업)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30,000	
나) (등록업+ 신고업)				4)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 사항의 변경	1건	20,000	
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 복합유통제공업등록 수수료의 1/2로 함.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	
6) 안경업소 인정신청	1건	20,000		6)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2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인·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1건	20,000		1) 공유재산 대부(계속대부) 신청	1건	1,000	
2) 체육시설업 변경	1건	10,000		2)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2,000	
				3) 건설기계 저장등록(말소) 신청	1건	1,000	
				4)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 신청	1건	10,000	

현 행				수 정 안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생략)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목</th> <th>단 위</th> <th>수수료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td> <td>1건</td> <td>600원</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u><삭제></u> (제1호 나목) 으로 등재)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